|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33호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를 규범화하고 완벽히 구축하고자, 국가세무총국은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공표하며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첨부: 장애인을 고용한 납세자의 증치세 환급(퇴세) 신청 성명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159348/content.html국가세무총국2016년5월27일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 　　제1조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6]52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감면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3호)및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증치세 즉시환급(퇴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경우, 본 방법 규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납세자라 함은 장애인을 고용한 단위와 개인사업자를 가리킨다.제3조 납세자가 최초 세수우대정책 향유를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다음의 등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3.1 <세무자격등록표>3.2 고용한 장애인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8급)>사본, 원본과 일치함을 명기하고, 또한 매 페이지마다 법인인감 날인.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정신장애인이 취업에 동의한 서면성명 및 그 법정보호자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신장애인이 근로조건과 근로의사가 있음을 증명한 서면자료 제공3.3 고용한 장애인의 신분증 사본, 원본과 일치함을 명기하고, 매 페이지마다 법인인감 날인.제4조 주관세무기관은 등록 수리 후,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8급)>정보 및 고용한 장애인의 신분증명정보 전부를 징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자가 제공한 등록자료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상황에 관해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가 증치세를 환급 받고자 신청 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1 <퇴(저)세신청심의표>6.2 <장애인을 고용한 납세자의 증치세 환급(퇴세) 신청 성명> (첨부문서 참고)6.3 당기에 장애인에게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증명문건의 사본 및 납세자가 법인인감 날인으로 확인한 납세인원, 납부금액, 납부기간을 명기한 명세표6.4 당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납세자가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월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서특수교육학교에서 설립한 기업이 증치세를 환급받고자 신청할 경우, 자료(6.3)과 (6.4)는 제공하지 않아도 됨.제7조 납세자가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고자 신청할 경우, 제공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 제공자료의 완전성과 증치세 환급(퇴세)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해 심사한다.제8조 주관세무기관은 환급(퇴세)신청을 수리한 후,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을 조사하고, 신용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환급 증치세액 계산을 심사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환급(퇴세)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자는 당기 환급 증치세액을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기 환급 증치세액= 당기 월별 매월 환급 증치세액의 합월 환급 증치세액=납세자 당월 고용한 장애인 수 X 당월 최저임금표준의 4배 월 최저임금표준이라 함은 납세자 소재 구현(현급 시 및 기 포함)에 적용된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포함)인민정부 비준을 거친 월 최저임금표준이다. 납세자는 당기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당기 환급 증치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내 이전 납세기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에서 기환급 증치세액을 공제한 잔액 중 환급할 수 있으며, 여전히 환급이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이후 납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연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연도 환급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퇴세)액은 연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된다. 연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연도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퇴세)액은 연도 환급세액이 된다. 연도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환급이 부족한 경우, 이후연도로 이월하여 환급 받을 수 없다. 제10조 납세자는, 새로 고용한 장애인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한 차월부터 계산하고, 기타직원들은 고용한 차월부터 계산한다. 고용한 장애인과 기타직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당월부터 계산한다. 제11조 주관세무기관은 매년 2월 말 전에, 해당 사이트 또는 세무처리 서비스 부문에서 본 지역의 전년도 장애인을 고용하여 증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한 납세자 정보는 다음 항목에 따라 공시한다: 납세자 성명, 납세자 식별번호, 법정대표인, 환급(퇴세) 계산한 장애인 직원의 연인원 등. 제12조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명 또는 검증할 수 있고정책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자료에 대해 보관의무를 가진다. 납세자는 세무기관 후속관리 중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세무기관은 그 해당되는 납세기간 내 기향유한 증치세 환급(퇴세)을 추납하고, 세수징수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세수우대정책 실행상황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고자, 납세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재세[2016]52호 문건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조사 발견한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본 방법 실시 전, 이미 세수우대 자격 등록을 마친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이 그 등록자료가 본 방법 제3조 규정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장애인정보가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만약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등록자료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정보를 추가 입력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제1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징수관리시스템 중 장애인정보에 대해 비교 대조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 16조 본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33号为规范和完善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管理，国家税务总局制定了《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管理办法》，现予以公布，自2016年5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安置残疾人纳税人申请增值税退税声明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159348/content.html国家税务总局2016年5月27日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管理办法　　　第一条 为加强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管理，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6〕52号）、《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税收减免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43号）及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纳税人享受安置残疾人增值税即征即退优惠政策，适用本办法规定。　　本办法所指纳税人，是指安置残疾人的单位和个体工商户。　　第三条 纳税人首次申请享受税收优惠政策，应向主管税务机关提供以下备案资料：　　（一）《税务资格备案表》。　　（二）安置的残疾人的《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证》或者《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1至8级）》复印件，注明与原件一致，并逐页加盖公章。安置精神残疾人的，提供精神残疾人同意就业的书面声明以及其法定监护人签字或印章的证明精神残疾人具有劳动条件和劳动意愿的书面材料。　　（三）安置的残疾人的身份证明复印件，注明与原件一致，并逐页加盖公章。　　第四条 主管税务机关受理备案后，应将全部《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证》或者《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1至8级）》信息以及所安置残疾人的身份证明信息录入征管系统。　　第五条 纳税人提供的备案资料发生变化的，应于发生变化之日起15日内就变化情况向主管税务机关办理备案。　　第六条 纳税人申请退还增值税时，需报送如下资料：　（一）《退（抵）税申请审批表》。　（二）《安置残疾人纳税人申请增值税退税声明》（见附件）。　（三）当期为残疾人缴纳社会保险费凭证的复印件及由纳税人加盖公章确认的注明缴纳人员、缴纳金额、缴纳期间的明细表。　　（四）当期由银行等金融机构或纳税人加盖公章的按月为残疾人支付工资的清单。　　特殊教育学校举办的企业，申请退还增值税时，不提供资料（三）和资料（四）。　　第七条 纳税人申请享受税收优惠政策，应对报送资料的真实性和合法性承担法律责任。主管税务机关对纳税人提供资料的完整性和增值税退税额计算的准确性进行审核。　　第八条 主管税务机关受理退税申请后，查询纳税人的纳税信用等级，对符合信用条件的，审核计算应退增值税额，并按规定办理退税。　　第九条 纳税人本期应退增值税额按以下公式计算：　　本期应退增值税额=本期所含月份每月应退增值税额之和　　月应退增值税额=纳税人本月安置残疾人员人数×本月月最低工资标准的4倍　　月最低工资标准，是指纳税人所在区县（含县级市、旗）适用的经省（含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人民政府批准的月最低工资标准。　　纳税人本期已缴增值税额小于本期应退税额不足退还的，可在本年度内以前纳税期已缴增值税额扣除已退增值税额的余额中退还，仍不足退还的可结转本年度内以后纳税期退还。年度已缴增值税额小于或等于年度应退税额的，退税额为年度已缴增值税额；年度已缴增值税额大于年度应退税额的，退税额为年度应退税额。年度已缴增值税额不足退还的，不得结转以后年度退还。　　第十条 纳税人新安置的残疾人从签订劳动合同并缴纳社会保险的次月起计算，其他职工从录用的次月起计算；安置的残疾人和其他职工减少的，从减少当月计算。　　第十一条 主管税务机关应于每年2月底之前，在其网站或办税服务厅，将本地区上一年度享受安置残疾人增值税优惠政策的纳税人信息，按下列项目予以公示：纳税人名称、纳税人识别号、法人代表、计算退税的残疾人职工人次等。　　第十二条 享受促进残疾人就业增值税优惠政策的纳税人，对能证明或印证符合政策规定条件的相关材料负有留存备查义务。纳税人在税务机关后续管理中不能提供相关材料的，不得继续享受优惠政策。税务机关应追缴其相应纳税期内已享受的增值税退税，并依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处理。　　第十三条 各地税务机关要加强税收优惠政策落实情况的后续管理，对纳税人进行定期或不定期检查。检查发现纳税人不符合财税〔2016〕52号文件规定的，按有关规定予以处理。第十四条 本办法实施前已办理税收优惠资格备案的纳税人，主管税务机关应检查其已备案资料是否满足本办法第三条规定，残疾人信息是否已按第四条规定录入信息系统，如有缺失，应要求纳税人补充报送备案资料，补录信息。　　第十五条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应定期或不定期在征管系统中对残疾人信息进行比对，发现异常的，按相关规定处理。　　第十六条 本办法自2016年5月1日起施行。　　 　　 |